



제 429국회 (정기회)
제 9 차 교 육 위 원 회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기초법학 및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 이수 의무화 >
■ 진선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664호)

2025. 11.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 선 영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기초법학 및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 이수 의무화	2
2. 개정안 부칙에 대한 검토	7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진선미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9. 03.
3. 회 부 일 : 2025. 9. 0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이수에 필요한 학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점 이상으로 하되, 학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최근 법학전문대학원의 교과과정이 변호사시험 대비 과목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음. 이는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목표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학문으로서의 법학 발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철학, 법사학, 법사회학 등 기초법학 과목과 국제법, 노동법, 경제법, 환경법 등 전문적 법률 분야에 관한 과목을 일정 학점 범위 내에서 이수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이수에 필요한 학점에 기초법학 및 전문적 법률 분야에 관한 과목의 학점을 포함함으로써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법조인 양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후단 및 제4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기초법학 및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 이수 의무화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이수에 필요한 학점에 기초법학 및 전문적 법률 분야에 관한 과목의 학점을 포함하고, 과목의 종류, 학점의 인정범위, 최소 이수 학점, 이수 조건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규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9조(학점) ①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학위과정의 이수에 필요한 학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점 이상으로 하되, 학칙으로 정한다. <후단 신설>	제19조(학점) ① ----- ----- ----- ----- . 이 경우 기초법학 및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의 학점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설>	④ 제1항 후단에 따른 기초법학 및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의 종류, 학점의 인정범위, 최소 이수 학점, 이수 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검토의견

□ 법학전문대학원 제도(2009년 도입)는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사람에게 전문적인 법률이론 및 실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음.

□ 그런데 현재의 로스쿨 재학생들은 유급의 위험이나 변호사시험에서 합격을 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부담감,¹⁾ 변호사 자격 취득 이후 취업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학점취득과 변호사시험 준비에 적합한 과목 위주로 이수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으며, 실무과목을 소홀히 하거나 변호사시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거나 시험과목이 아닌 과목에 대해서는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음.²⁾

□ 이로 인하여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따르면, 변호사시험과 연관성이 적은 기초법학의 경우에는 대다수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수강인원 부족으로 폐강되거나 기초법학 전공 전임교수의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있음.

□ 또한, 변호사시험의 과목³⁾인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으로 응

1) 응시자 대비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제1회 87.15%, 제2회 75.17%, 제3회 67.63%, 제4회 61.11%, 제5회 55.20%, 제6회 51.45%로 점차 떨어졌고, 그 이후로 제13회에 이르기까지 50%대를 넘지 못하고 있다.

2)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법학과 법치주의의 위기와 대응방안」, 『한국법학교수회·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공동 학술대회 자료집』, 2024.7.26.

3) 「변호사시험법」 제9조(시험과목) ① 시험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법(헌법 및 행정법 분야의 과목을 말한다)
2. 민사법(「민법」, 「상법」 및 「민사소송법」 분야의 과목을 말한다)
3. 형사법(「형법」 및 「형사소송법」 분야의 과목을 말한다)

4.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으로 응시자가 선택하는 1개 과목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자가 선택하는 1개 과목(이하 ‘선택과목’이라 함)의 경우에도 특정한 과목으로 편중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실제 최근 변호사시험에서의 선택과목 응시 현황을 보면, ‘국제거래법’과 ‘환경법’에 응시자가 편중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음.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시험 응시자 현황]

(단위 : 명, %)

구분	경제	국제거래	국제	노동	조세	지적재산권	환경	전체
2018년 (7회)	309	1,404	241	415	81	95	695	3,240
	(9.5)	(43.3)	(7.4)	(12.8)	(2.5)	(2.9)	(21.5)	(100.0)
2019년 (8회)	378	1,439	236	334	108	114	721	3,330
	(11.4)	(43.2)	(7.1)	(10.0)	(3.2)	(3.4)	(21.7)	(100.0)
2020년 (9회)	427	1,224	303	242	99	115	906	3,316
	(12.9)	(36.9)	(9.1)	(7.3)	(3.0)	(3.5)	(27.3)	(100.0)
2021년 (10회)	386	1,147	298	203	103	121	898	3,156
	(12.2)	(36.3)	(9.4)	(6.4)	(3.3)	(3.8)	(28.5)	(100.0)
2022년 (11회)	336	1,291	348	169	87	98	868	3,197
	(10.5)	(40.4)	(10.9)	(5.3)	(2.7)	(3.1)	(27.2)	(100.0)
2023년 (12회)	258	1,559	382	138	71	103	744	3,255
	(7.9)	(47.9)	(11.7)	(4.2)	(2.2)	(3.2)	(22.9)	(100.0)

주) 법무부는 과목쏠림현상 방지를 위하여 2024년부터 현황을 비공개하고 있음.

자료: 법무부

□ 이는 선택과목의 성적을 필수과목과 동일하게 총득점에 산입하여 합격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데, 과목 간 난이도 차이와 로스쿨 간 강의 여건의 차이로 인해 수험생 간 점수 유불리가 발생하기 때문

임.4)

□ 이러한 선택과목 쏠림 현상은 단순히 시험의 공정성 저해 문제뿐만 아니라, 법학 교육의 다양성 저해, 인기 과목으로의 인력, 자원 편중으로 인한 비인기 과목의 역량 악화 등을 야기할 수 있음.

이는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실무적·종합적 능력을 갖춘 법조인 양성이라는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법학교육 과정에서 이에 대한 보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음.

□ 이에 따라 개정안은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이수에 필요한 학점에 기초법학 및 전문적 법률 분야에 관한 과목⁵⁾의 학점을 포함함으로써 법률적 쟁점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고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는데 기여하려는 취지에서 제안된 것임.

□ 개정안이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이수 필요 학점으로 기초법학 및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의 학점을 포함함으로써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 및 학문으로서의 법학 발전을 위하여는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4) 강명수,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제도 개선방안 연구」, 『법학논고』 제84권 제1호,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24, p.3.

5) <교육과정의 기본구조>

법 주	주요 과목
기본법학 과목	헌법, 민법, 형법, 행정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전문법학 과목	노동법, 환경법, 지식재산권법, 국제거래법, 조세법, 국제법 등
기초법학 과목	법철학, 법조윤리, 법사학, 법사회학, 법학방법론, 젠더법학, 인권법학 등
실무법학 과목	법률정보 조사, 법문서 작성, 모의재판, 실습과정

□ 다만,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은 대학의 자율사항으로 특정 분야의 과목을 의무화하거나 인정범위·이수조건 등을 법령(개정안 대통령령)으로 규제하는 경우 대학의 자율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대학 현장의 지적이 있으며,

「고등교육법」 제21조 및 제35조에서는 대학(원)의 교육과정 및 학위수여를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⁶⁾ 법학전문대학원의 기초법학 및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만 법령(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법체계 정합성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 다음은 관계기관의 의견을 보면, 교육부는 기초법학 및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의 학점을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이수 필요 학점으로 포함할 필요성이 있다는 개정안 취지에 공감하지만,

법학전문대학원의 개별 여건에 따라 과목 개설 정도와 교원의 확보 등에 차이가 있는 만큼 일률적으로 규제를 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는 교과목의 운영은 각 법학전문대학원의 자율사항인데 특정 과목의 학점 이수를 법정화하는 것은 현행 법 체계에 이질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학점이수에 필요한 사항을

6) 「고등교육법」 제21조(교육과정의 운영) ① 학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35조(학위의 수여) ② 대학원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해당 과정의 석사학위나 박사학위를 수여한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등이 판단하여 정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 고려대학교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개별 여건에 따라 기초법학 및 전문 선택법 분야의 과목개설 정도와 필요충분한 교원의 확보 상황 등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며, 이화여대는 각 법학전문대학원은 변호사시험 합격을 목표로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기초법학 및 전문적 법률분야 과목에 대한 필수 이수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2. 개정안 부칙에 대한 검토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의 부칙은 제1조의 시행일과 제2조의 적용례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법 시행 이후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사람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 부칙 조문]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수학점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나. 검토의견

□ 안 부칙 제1조는 시행일을 규정하면서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시행일을 특정하고 있음.

그런데 개정안의 통과여부에 대해 명확한 시점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기초법학 및 전문적 법률 분야 과목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나 학점이수제의 구체적 운영방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부족하므로, 개정안 통과시점을 고려하여 시행령 준비에 충분한 시간을 두면서 시행일을 규정할 필요가 있겠음.

문 의 처
02)6788-5188